

의안번호	제537호
의결 연월일	2024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3월 13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53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13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제3항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자문위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80조제1항에 자문위 위원의 임기를 4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국민권익위원회(2023. 7. 25.)에서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함.
 - 대부분 시·도의회 자문위 위원 임기 2년(1회 연임)
 - 위원 교체 없이 최대 8년간 운영될 수 있어, 위원과 의원 간 유착관계 형성에 따른 심사 관대화 등을 우려
- 이에, 자문위 위원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 80조제1항을 4년에 1회 연임에서 2년에 1회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80조제1항 개정

3. 규칙안(개정규칙안)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 “4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연임할 수 없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자문위원회 임기)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<u>4년</u> 으로 하며,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	제80조(자문위원회 임기)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<u>2년</u> 으로 하며,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이하 생략)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)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- 제80조(자문위원회 임기) ①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4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위원이 질병, 장기여행, 중도사퇴, 품위손상,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